

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

제정 '01. 5.10. 건관 58824-318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고 한다) 제38조의18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사후평가”라 함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, 공사기간, 수요,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외부 전문기관”이라 함은 발주청, 용역자, 시공사 등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별도의 평가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평가의 내용) ①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.

1.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·분석

2. 공사계획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·분석
 3.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 4. 주민의 호응도
 5. 공사비, 공사기간,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,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,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시행령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하되 이 경우 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토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평가지기) ① 제2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간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.

② 분할발주공사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공사별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사후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방법) ①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“건설공사사후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. 다만,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.

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“사후평가결과보고서” 및 “사후평가표”(별표 1)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후평가결과보고서)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(사후평가결과 제출) 발주청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“사후평가결과보고서(CD-ROM 포함)” 및 “사후평가표”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후평가결과 활용) ① 발주청은 유사한 공사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결과보고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결과보고서를 배포받은 발주청은 이를 유사한 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건설교통부장관은 “사후평가결과보고서” 및 “사후평가표”를 축적·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시행기준)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1. 7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례) 이 지침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의 사후평가는 이 지침에 의한다. 다만, 시행중인 건설공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여부를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다.

[별표 1] 사후평가표

관리번호		평가일					
준공일							
공사개요							
공사명							
사업규모	(연장(Km), 개소 등)						
발주기관	평가담당자(부서/직위/성명)						
위치							
계약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일괄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안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경쟁 기타()						
사업의 난이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하						
평가 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하						
공사개요							
사업 참여자							
구분	계약기간	건설(용역)업체명	대표	발주청(부서)	비고		
예비타당성조사							
타당성조사							
기본설계							
실시설계							
시공							
감리							
기타							
*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							
사업 수행평가							
설계용역평가	점		시공평가	점			
구분	예비타당성단계	타당성조사단계	기본설계단계	실시설계단계	공사계약(①)	준공(②)	% (②/①)
수행기간(~)							
설계비							
공사비							
감리비							
보상비							
기타							
설계변경	횟수	사유		금액			
		물량증감					
		신규비목					
		기타계약내용의 변경					
		물가변동					

사업평가내용

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필요하면 A4용지에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것.

기획시 예측수요	실수요 평가: <input type="checkbox"/> 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하
기획시 기대효과(타당성 조사시의 편익항목을 중심으로 기입할 것.) ○ ○ ○ ○	실제효과 평가: <input type="checkbox"/> 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하
주요문제점과 개선사항(특히 사업효과, 공사비 혹은 공사기간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그 원인을 기술할 것)	
주민의 호응도	
기타사항(신기술 적용, 우수사례 등 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할 것)	

※별첨 : 1. 설계용역평가표 2. 시공평가표 3.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 현황 4. 기타(명기할것)